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내덕노인복지센터

■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1등급~5등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 요청 및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이외의 어르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 ① 내덕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 별 비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 ②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표 1]

서비스 이용료는 급여에 따른 산정기준에 의하며,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내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①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을 받아 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이용료는 [별표1] 노인장기요양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의 금액에 의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징수하도록 한다.
 1. 식사재료비
 2. 간식비
 3.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③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혹은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이용액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1.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농협 (예금주:내덕노인복지센터) 농협 301-0124-8996-21"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다음 달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비용 부담은 [별표1] 노인장기요양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⑤ 시설 이용에 있어서 기 납부한 금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종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나 그의 보호자 등이 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정된 구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명세서와 함께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별표1] (2024.01.01)

노인장기요양법 본인부담률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부담률	6%	9%	15%

이용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종류	일반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률	15%	6% 또는 9%	무료

비급여 항목

종 류	금 액
식 대	중식 3,300원
간식비용	간식 70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고시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계약자(보호자)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 및 계약자(보호자)가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관하여 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및 고충을 논의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0.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출할 권리를 가진다.
 - 가. 본인의 건강상태
 - 나. 외출의 목적과 목적지 및 귀원 시간의 고지
11. 모든 어르신은 식사, 간식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가.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나. 차담 09:30, 중식 11:30, 간식 15:30으로 한다.
 - 다.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대체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④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⑧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⑨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 ⑩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⑪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